

성평등가족부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국무위원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
연 월 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퇴소 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자립지원금 및 자립수당의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 피해자가 25세가 될 때까지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폭력피해상담소·보호시설 등의 상담원·종사자 등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성폭력방지법」이 개정(법률 제21273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보호시설 입소기간 연장 사유 등 법률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종사자 수를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호시설 입소기간 연장(안 제7조의2)

특별지원 보호시설의 입소기간 연장 사유를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또는 치료가 필요하거나, 생활환경 또는 사회적응능력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 수정하고, 일반보호시설·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및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에 입소 중인 미성년 피해자의 입소기간 연장사유를 규정함

나. 범죄경력조회 및 회신(안 제8조의6 및 별지 제7호의8부터 제7호의10
까지 서식)

상담원등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요청서, 본인 동의서
및 회신 등의 관련 서식을 마련함

다. 보호비용의 지원 신청(안 별지 제7호서식)

보호비용 신청서의 보호비용 종류에 퇴소 시 자립수당 및 의료비를 추
가함

라. 통합지원센터 종사자의 수(안 별표 3)

소장을 ‘전문소장’으로, 부소장을 ‘행정소장’으로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4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호시설의 주소지”를 “보호시설 또는 피해자의 주소지”로 한다.

제7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 각 호(제2호 단서 및 제3호의2 단서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제1항 각 호(제2호 단서 및 제3호의2 단서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3. 특별지원 보호시설: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여 심리적 안정 또는 치료가 필요하거나, 피해자의 생활환경 또는 사회적응능력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입소기간의 연장은 보호시설의 장이 보호

시설에 입소 중인 피해자로서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가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하여 심리적 안정 또는 치료가 필요하거나, 피해자의 생활환경 또는 사회적응능력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다.

제8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6(범죄경력조회 및 회신) ① 영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7호의8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는 별지 제7호의9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회신은 별지 제7호의10서식에 따른다.

별표 3 제1호 본문 중 “소장 1명, 부소장 1명”을 “전문소장 1명, 행정소장 1명”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본문 중 “종사자”를 “행정소장 등 종사자”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소장”을 “전문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의8서식부터 별지 제7호의10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호비용 [변경]신청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이내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족관계	신청인 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학력/재학 여부 (학교명/학년/반)	건강 상태 (장애/질병)	취업 상태	
						직업	직장명
보호비용 종류	[]생계비 [] 아동교육지원비 [] 아동양육비 [] 퇴소 시 자립지원금 [] 퇴소 시 자립수당 []의료비						
통지 방법	[]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서면 [] 그 밖의 수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호비용을 신청([]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대리신청의 경우)

보호시설의 장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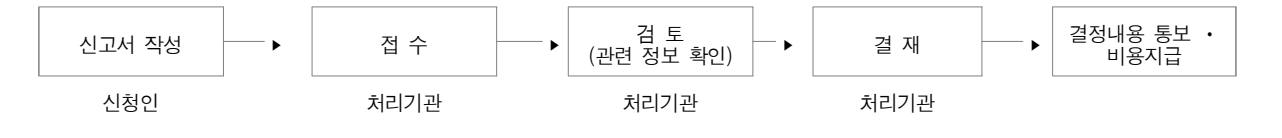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부 1. 수수료 또는 납입금 등 납입고지서 사본 1부(아동교육지원비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	---	------------

고 지 사 항

이 신청서를 접수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 요구와 관련된 사항, 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법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 소득·재산·근로능력 및 취업상태,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에 관한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전산망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보장정보는 5년이 지나면 파기됩니다. 다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처리절차



범죄경력조회 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요청인	성명		직위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대상자	성명	한글	자국어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6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장

요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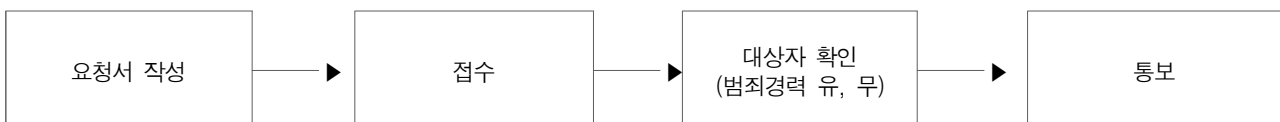
_____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귀하

요청인 제출 서류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요청인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	(한글)		(자국어)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 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본인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종사자(또는 종사하려는 자)로서, 같은 법 제19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6제2항에 따라 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_____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 번호를 적습니다.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요청인	성명		직위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대상자	성명	한글	자국어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 과 여권번호 또는 외 국인 등록번호	
	주소			
범죄경력 조회 결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6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직인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4(취업 지원 대상자)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취업 지원의	제2조의4(취업 지원 대상자) ----	----	제4항-----
대상자는 미성년이거나 장애인	인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사	-----	-----	-----
람으로 한다.		-----	-----	-----.
제7조(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4조에 따라 보	제7조(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① -----	-----
호비용을 지원받으려는 보호시	설의 장 또는 성폭력피해자(이	-----	-----	-----
하 “피해자”라 한다)는 별지 제	7호서식의 보호비용 신청서(전	-----	-----	-----
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	-----	-----	-----
다)를 첨부하여 <u>보호시설의 주</u>	<u>소지</u> 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	-----	<u>보호시설 또는</u>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	-----	<u>피해자의 주소지</u> -----
한다.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의2(보호시설 입소기간의 연	장)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제7조의2(보호시설 입소기간의 연	장) ① -----	-----
따른 입소기간의 연장은 보호시	설의 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	-----	-----

따라 할 수 있다.

1. · 2. (생략)

3. 특별지원 보호시설: 피해자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각종 학교에 재학(입학이 확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중인 경우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의2. · 4. (생략)

<신설>

② 보호시설의 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장은 제외한다)은 제1항 각 호(제2호 단서 및 제3호의2 단서의 경우

-----.

1. · 2. (현행과 같음)

3. 특별지원 보호시설: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여 심리적 안정 또는 치료가 필요하거나, 피해자의 생활환경 또는 사회적응능력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의2. · 4.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입소기간의 연장은 보호시설의 장이 보호시설에 입소 중인 피해자로서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여 심리적 안정 또는 치료가 필요하거나, 피해자의 생활환경 또는 사회적응능력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다.

③ -----

----- 제1항 각 호(제2호 단서 및 제3호의2 단서의 경우는

는 제외한다)에 따라 피해자의
입소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입소
기간을 연장한 날부터 15일 이
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그 사유와 연장되는 기
간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입소
기간의 연장은 일반보호시설의
장이 2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
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
보호시설의 장(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일반보호시설의 장은
제외한다)은 미리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 설>

제외한다) 및 제2항-----

-----.

④ ----- 제4항-----

-----.

-----.

제8조의6(범죄경력조회 및 회신)

① 영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범
죄경력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7
호의8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범
죄경력조회 동의서는 별지 제7
호의9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범
죄경력조회 회신은 별지 제7호

의10서식에 따른다.